#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37

발의연월일: 2021. 1. 4.

발 의 자:신현영·김병주·홍정민

박찬대ㆍ이용우ㆍ허 영

김영배 · 이용빈 · 정필모

이광재・서동용・이수진비

용혜인 • 이규민 • 송영길

허종식 • 유정주 • 윤영찬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

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.2%로작년에 비해 0.4%P 감소함(OECD 평균 89.7%). 특히 부산 6.0%, 인천 4.5%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.

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산 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 각각 7병상이 줄었으며, 광주, 대 전, 세종, 울산은 지방의료원도 없는 실정임.

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'치료 가능한 사

망률(amenable mortality rate)'도 시·군의 69%는 전국 평균(50.4명)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(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).

의료기관은 설립은 300~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, 기관당 1,500억~2,500억원 정도가 필요함. 이는 고속도로 4~7km를 만드는 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.

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의 방식으로 늘리도록 목표를 명시하여 지역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).

# 주요내용

가.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, 매입 등으로 지방 의료원을 설립(안 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"지방의료원을"을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1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, 매입 등의 방법으로"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"을 "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(分 院)을 둘 수 있다.	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 춘 1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제2 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 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 설, 매입 등의 방법으로
② ~ ⑥ (생 략) 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 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의 설립, 시설・장비 확 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 략)	